

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
[시행 2008.12.29] [행정안전부령 제49호, 2008.12.29, 일부개정]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) ① 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29>

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, 2008.12.29>

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「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,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>

④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>

1.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
2. 감리법인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증

제3조 (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)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법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, 2008.12.29>

1. 등록증
2.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②제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.

③법 제12조제3항에서 "행정안전부령"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8.3.4>

1. 법인 명칭이나 상호의 변경
2. 대표자나 임원의 변경
3. 감리원 변경
4. 자본금 변경. 다만,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자본금 변경은 제외한다.
5.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

제4조 (감리원의 교육시간 등)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은 별표 1과 같다.

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교육시간을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5조 (감리원증의 교부와 관리 등)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리원증교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>

1. 증명사진 2매
2. 자격취득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
3. 경력증명서
4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

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영 제14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과 교육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(이하 "관리원부"라 한다)에 적고,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(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말한다)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(이하 "감리원증"이라 한다)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, 2008.12.29>

③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 또는 영문으로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리원증재교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(영문으로 다시 교부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, 2008.12.29>

1. 삭제 <2008.12.29>
2. 감리원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
3. 감리원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원증
4.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감리원증

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리원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리원부에 변경사항을 적고, 신청인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>

제6조 (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)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감리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리법인에게 알리고,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>

제7조 (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>

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(이하 이 조에서 "교육기관"이라 한다)은 감리원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4>

③ 교육기관은 교육을 수료하는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이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49호, 2008.12.2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